

재직자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1. 14.	제3차 개정	2020. 3. 1.
시행일	2012. 11. 14.	제4차 개정	2021. 3. 1.
제1차 개정	2015. 3. 1.	제5차 개정	2022. 3. 1.
제2차 개정	2018. 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대상으로 개설한 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 2022.3.1.>

제2조(학생의 선발) 본 대학교 학칙 제12조가 정한 입학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격,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등은 모집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8.1.10., 2020.3.1.>

제3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재직자 특별과정의 학기는 1년 4학기제로 매년 학기는 제1학기, 여름특별학기, 제2학기, 겨울특별학기로 구분하며, 학기운영의 세부사항은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개정 2022.3.1.>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2.3.1.>

제4조(학기당 수강학점)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

1. 제1학기 및 제2학기 : 15학점까지
2. 여름특별학기 및 겨울특별학기 : 9학점까지

제5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 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② 등록금은 학기단위로 정하며 여름특별학기, 겨울특별학기는 1,2학기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교는 1학기 및 여름특별학기, 2학기 및 겨울특별학기의 등록금을 동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3.1., 개정 2022.3.1.>

④ 11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학칙 제43조제3항의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산업체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하며, 교

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3.1>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현장연구교과로 구분하고,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3.1>

③ 현장연구교과는 주간 연구일지 및 학기말 종합보고서 제출, 연구발표회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3.1>

제7조(재직자 특별과정 운영위원회) ① 재직자 특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3.1>

② 위원회는 책임교수 및 참여학과(부)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3인 이상과 산업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장이 지정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체 관계자는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3.1>

③ 위원장은 책임교수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신설 2022.3.1>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3.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3.1>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직자 특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업) ① 수업은 주중 야간(10교시 이후) 및 주말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3.1>

② 재직자 특별과정을 위하여 개설된 수업에 한하여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졸업에 필요한 과목으로써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1>

③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 그 밖에 전공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2.3.1>

⑤ 현장연구교과 및 원격수업은 “P” (합격), “NP” (불합격)로 평가하여 평점 및 평점평균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1>

제9조(학년수료) ①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점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제10조(졸업) ① 졸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지정된 필수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구분	교양	전공	현장연구	졸업학점
학점	24학점이상	63학점이상	12학점이상	120학점

② 11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칙 제36조 제4항의 조기졸업 신청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재직자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전과, 재입학, 다전공, 학석사연계과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3.1.>

제12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요건 경과조치) 제10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021학번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